

대기업 축산업 참여 원천봉쇄

– 축산업 허가상한선 설정 법에 명시 –

양돈업계가 3년간 추진해온 축산법 개정 문제가 마침내 3월 8일 11시 21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정부의 공포만을 남겨놓은 채 일단락 되었다.

국회는 지난 3월 8일 본회의를 열고 중소규모 축산농가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금지 ▲ 축산업 허가상한선 설정 ▲ 축산업심의위원회 신설 ▲ 허가상한선 초과업체 2년 이내에 허가상한선 이하로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축산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서 '77년 12월 19일 전면개정된 축산법은 '81년, '82년, '84년 8월, '84년 12월, '87년 12월 등 5차례에 걸쳐 개정된 이후 여섯번째 개정을 보게 되었다.

◎ 축산법 개정 배경

'84년 8월에 개정된 축산법은 중소규모 농가들이 재벌기업 축산을 규제해 달라고 관계요로에 건의해서 개정되었었다. 그 주요 골자는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부업 축산에 의한 농가 소득

증대, 가축개량을 위해 ▲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업자 등록 및 허가 ▲ 축협 및 허가축산업자 등에 대한 계열화 생산 ▲ 축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한 필요조치 위반시 초과사육부과금 부과 및 등록 허가 취소 등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축산업계에 최초로 등록·허가제를 도입했었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대기업 축산보다는 중소규모 축산농가를 규제하는 법으로 운영돼 왔고, 이에 따라 등록업자들의 불만과 원성의 법이 되고 말았다. 즉 양돈농가들의 신규등록과 등록두수의 변경이 자유로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주기적으로 관계공무원이 농장을 드나들며 돼지 마리수를 세고, 등록두수를 초과 사육할 경우 감축명령과 초과사육 부과금을 부과해 전업규모인 이들 등록업체가 불만을 토로하고 등록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등록업체와 소규모 업체들은 전업규모인 등록업체와는 달리 정부가 허가업체에 대해서는 허가규모 외에 계열화 생산, 돈육수출을 할 경우 허가규모 이상을 사육해도 감축명령이나 부과금을

개정 축산법 주요 내용

1.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원천 봉쇄
2. 축산업의 허가상한선 설정 명문화
3. 축산업심의위원회 신설
4. 허가상한선 초과업체 2년이내 감축

부과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운영하자 더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덧붙여 신규로 도시 대자본이 속속 양돈업에 진출하자 등록업체를 비롯한 영세양돈농가들이 대기업의 축산업 침투 부당성을 지적하며 법개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본회를 비롯한 축산단체에서는 '86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 중소규모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등 비농민대자본의 축산업 참여 금지 ▲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축산업 허가상한선 설정 ▲ 축산업 등록제 폐지를 국회 및 관계당국에 건의, 축산법이 개정된 것이다.

사실 기존 축산법 중 허가규정을 대기업의 축산진출을 합법화 시키면서 양돈 등의 분야에 있어 중소양돈업자의 생산기반이 침식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허가상한선의 예외규정을 악용함으로써 계층간의 불만을 낳았다. 즉 계열화는 사육규모 확대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수출의무량 규정 조항도 수출여하에 따라 가격파동의 원인을 제공하면서 규모확대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등록제와 허가제를 혼동하여 등록규모 농가에만 규제가 집중되고 농가의 자율생산을

저해해 왔으며, 축산농가를 범죄인시 해 온 것이 사실이다.

◎ 축산법 개정 의미와 특징

그러면 이번 축산법의 개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개정 축산법에는 ▲ 대기업의 축산참여 금지 ▲ 허가상한선 설정 ▲ 축산업심의위원회 신설 ▲ 허가상한선 초과업체 2년이내 감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축산업계에서 생점이 돼 왔던 도시자본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원천봉쇄, 중소규모의 축산농가를 보호한다는 측면과 허가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분배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민주화시대의 흐름을 국회가 받아들여 강력한 의지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축산법 개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부내에 「축산업심의위원회」를 구성 토록 함으로써 축산농가가 직접 축산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축산업심의위원회는 법에 정한 허가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축산업 참여금지 대기업의

기준설정 뿐만 아니라 축산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생산자 단체를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축산행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며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이번 축산법은 본회를 비롯한 생산자단체가 건의한 내용이 대폭 반영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본회는 국회와 정부에 ① 신규재벌 참여금지 ② 허가상한선 설정 ③ 등록제 폐지 등 3 가지를 수차례 건의했으며, 이중 ①과 ②가 이번 법 개정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③ 항인 등록제 폐지가 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축산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것과 동시에 지금까지 신규등록을 안해주고 변경등록을 규제하던 정부의 각종 규제가 풀려, 사실상 등록제 폐지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동안 등록제가 축산법에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나친 규제 등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신규등록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변경등록을 원하면 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등록제가 법에 있음으로 인해 겪는 불편은 없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정부에서도 등록제 대상규모를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있어 그동안 양돈인들이 요구한 것은 모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등록제가 폐지되지 않음으로 인해 불평하는 양돈농가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 등록제 폐지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근본이유는, 등록제를 없애고 허가제만 운영할 경우 축산업 참여금지대상인 대기업도 4,999두까지는 양돈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법 형편상 국회가 정부의 의사를 존중, 등록제를 존속시킨 것으로 보인다. 실제 등록제를 폐지하면 대기업이 4,999두까지는 신규로 양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재벌규제의 의미도 없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등록하한선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처벌 일변도가 아닌 양축농민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이 개선되어지기를 양축농민들은 바라고 있다.

◎ 향후 정부의 축산법 운영전망

농림수산부는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축산업 참여금지 대상 대기업의 기준을 설정 고시할 것이다.

이에 앞서 농림수산부는 지난 2월 「재벌기업의 축산업 신규참여억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대상기업을 보면 총 자산 4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계열사 608개 업체와 총여신규모가 1천5백억원 이상되는 50개 기업군의 계열기업 840개 업체 등 1,042개 업체가 신규축산업 참여 금지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농림수산부는 우선 1,0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축산업 참여를 금지하고 점차 2,000개 대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축산법이 개정됨으로써 기존의 허가업체가 받는 직접적인 영향은 전혀 없으며, 다만 축산업심의위원회에서 정한 허가상한선을 초과 사육하는 3~4개 업체만이 2년이내에 사육두수를 상한선 이하로 줄여야 된다. 그러나 실제 이 문제도 기존 축산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업체중 모돈 1,000두 이상 허가 받은 곳이 1곳도 없고, 또 모돈 1,000두 이상 사육하던 업체에 87년 6월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모돈 1,000두 이하로 감축할 것을 농림수산부가 지시한 바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은 아니다. 실은 이번 법개정이 과거 농림수산부가 집행하던 정책을 입법화 했다는 것 뿐이다. 또한 기존 허가업체중 축산업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축산업 참여금지 대상 대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현재 허가두수 이상으로는 허가를 받지 못하지만, 기타 업체는 사육상한선까지 허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허가업체에서 시행하던 계

열화 생산과 돈육수출도 허가상한선 범위내에서
는 과거와 같이 자유로이 할 수 있다.

그밖에 등록업체도 법 개정으로 특별히 영향을
받을 것은 없다. 오히려 정부가 신규등록과 변경
등록을 법 제정 취지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함
으로써 등록제 폐지와 같은 결과를 보장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등록업체라고 해서
일방적인 법 규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기서 한가지 지적할 점은, 현행 등록규
모 하한선인 모돈 50두를 노대통령이 제시한 92
년부터 농촌 1인당 평균소득 6,000불 시대에 걸
맞게 2,000~3,000두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점
이다. 향후 축산업심의위원회 등에서 등록규모의

상향조정 등이 거론되어 업계의 의견이 모아
지도록 노력하면 그간 쌓이고 쌓인 축산법 파동
은 종결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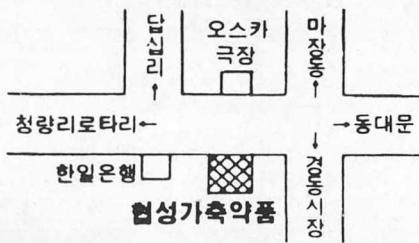
한편, 이번 축산법 개정을 계기로 기존 대기업
이 전담하던 돈육수출을 등록규모인 중산층들이
수출산업의 주역으로 등장하여 규모에 맞는 역
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자본과 기술이
요구되는 종돈과 농기업(Agribusiness) 부분은
대기업이 맡고 비육돈은 농민이 직접 사육하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산업발전에 전양돈인이 참
여하여 규모에 맞는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것이다.

董氏

〈글·김동성〉

동물약품 도매 전문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30년 전통의 판매업소
가축용 예방약, 치료제, 소독제등 일체총판
주야 전화상담환영 (질병문의 및 판매업소 개설상담)
지방주문 환영 (신속하고 정확한 우송)



협성가축약품
* 동물 약품 도매전문 *

〒 131 서울 · 동대문구 제기1동 654
(オスカーマーケット前)

본사 967-8779, 964-4870
청량리영업소 965-9778